

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 2 조(면제대상)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 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 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.		제 2 조(면제대상).....	
1.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 설		1-5(현행과 같음)	
2.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교육원			
3.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 립된 운수연수원			
4.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 관청의 인·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			
5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			
<u>(신 설)</u>		6. <u>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</u>	